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16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가합50115 부당이득금
원 고	[redacted]신탁 주식회사
피 고	1. [redacted]국
	2. [redacted]도
변 론 종 결	2017. 6. 28.
판 결 선 고	2017. 9.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redacted]국은 15,567,960원, 피고 [redacted]도는 185,432,0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명시적 일부 청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16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신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9. 9. 7. 주식회사 [redacted]엘[redacted](이하 '[redacted]엘[redacted]'라 한다)와 [redacted]시 [redacted]면 [redacted]리 [redacted] 일대 골프장 건설 부지(이하 '이 사건 골프장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redacted]엘[redacted]는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redacted]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나. [redacted]시장은 [redacted]엘[redacted]가 이 사건 골프장 중 일부인 요수코스 18홀의 건설을 완료한 후 유료로 시범라운딩을 실시하는 등 골프장의 일부를 사실상 사용하였다고 보아, 2012. 12.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중 [redacted]시 [redacted]면 [redacted]리 산 [redacted] 외 [redacted] 필지 695,6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1]에 따라 취득세 9,744,956,390원, 농어촌특별세 818,138,530원의 합계 10,563,094,9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12. 31.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위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redacted]시장은 [redacted]엘[redacted]가 이 사건 골프장 중 일부 코스를 완공한 뒤 공부상의 지목변경 절차 없이 실질적인 사업운영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1)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16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은 클럽하우스, 그늘집, 조경시설 등 부대시설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페어웨이 등 골프코스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비록 [redacted]엘[redacted]가 고객 유치 등의 목적으로 2011년 하반기부터 이 사건 토지에 건설된 일부 홀에서 극소수의 인원으로 하여금 라운딩을 하도록 하였지만, 임시로 설치된 컨테이너로 된 클럽하우스에서 간단한 샤워와 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간단한 도시락을 제공하면서 식사비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았을 뿐 그린피와 카트비 등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은 운영형태를 두고 실질적인 사업운영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redacted]시장은 이 사건 골프장의 실질적인 사용현황을 확인하지도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redacted]엘[redacted]가 이 사건 토지를 골프장으로 사실상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이에 따라 원고는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피고 [redacted]국에 대하여 그 납부세액 중 일부인 15,567,960원, 지방세인 취득세를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피고 [redacted]도에 대하여 그 납부세액 중 일부인 185,432,04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16

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내지 7,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에이엠엘앤디가 이 사건 토지를 골프장으로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오인할 만한 외관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이 사건 토지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redacted]는 2011. 12.경 이 사건 토지 상에 18홀의 코스공사를 완료하였고, 2011년 56,909,091원을 시설이용료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② [redacted]는 2012. 5. 1. 주식회사 [redacted]과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요수코스 시범라운딩 운영 일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redacted]은 2012. 4. 1.부터 2012. 7. 19.까지 합계 687,482,425원을 시설이용료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③ [redacted]시 소속 공무원은 2012. 7. 23.부터 2012. 7. 25.까지 이 사건 골프장에 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16

장조사를 나갔는데, 이 사건 토지에 건설된 18홀의 코스에서 라운딩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무실과 락커, 카트가 구비되어 있었다.

④ 이 사건 골프장의 위 코스는 시범운영을 위해 제한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동호회에서 이용하기도 하고 일반인의 예약을 주선해 주는 사람이 있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국

판사 윤아영

판사 이소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16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 · 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